

## 충청북도의정회설치 및 육성조례(안)

의안  
번호

285

제안년월일 : 1997. 12. 26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  
위원장

### 제안이유

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충청북도정 연구개발에 기여코자 충청북도 의정회설치 및 육성조례(안)을 제정코자 함.

### 주요골자

- 의정회는 충청북도의회의 전임의원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(안 제2조)
-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, 연구등 사업 (안 제3조)
- 충청북도는 의정회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보조할 수 있다. (안 제4조)

## 충청북도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충청북도의회의 발전과 도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, 연구할 충청북도의정회(이하 “의정회”라 한다.)의 설립과 보호·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 및 설립운영) ①의정회는 충청북도의회의 전임의원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.

②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③의정회의 설립·육성·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사업)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.

1.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발전방안에 대한 조사·연구
2.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건의
3. 사회복지문제 연구 및 홍보
4.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4조(보조금의 지원) 충청북도는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5조(운영규정)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6조(준용) 의정회의 육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